내 용 증 명

임대차 계약 만료 · 보증금 반환 요청

■ 발신인 (임차인)

성 명	
주 소	
연 락 처	

■ 수신인 (임대인)

성 명	
주 소	

제 목	임대차 계약 만료 통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의 건

■ 임대차 계약 내용

임차 주택	
계 약 일	20 년 월 일
계약 기간	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
보 증 금	금 원정
월 세	금 원 (□ 없음)

■ 내용

1.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.

2. 발신인은 위 임대차 계약을 계약 기간 만료일에 끝내고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 문서로 알려 드립니다.

3. 계약이 끝나는 날 주택을 비워 드릴 예정이니, 같은 날 보증금 전액을 아래 계좌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.

이사(인도) 예정일	20 년 월 일
반환 받을 계좌	은행 (예금주)

4.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· 지급명령 ·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, 반환이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겠습니다.

첨 부	1. 임대차계약서 사본 2. 보증금 이체 내역 사본

20 년 월 일

발 신 인	성명 (인)	서명 · 날인

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확인하세요

·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2 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. 이 기간에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(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 조).

· 이사를 나가기 전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,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(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 조의 3).

· 같은 문서를 3 통(원본 1 · 등본 2) 만듭니다. 원본은 수신인에게 가고, 우체국은 등본 1 통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 년간 보관합니다. 그동안 발신인 · 수신인 모두 재증명 ·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(우편법 시행규칙 제 48 조 · 제 54 조 · 제 55 조).

· 내용증명은 「이런 내용을 언제 보냈다」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할 뿐, 그 자체로 상대에게 돈을 내게 하는 강제력은 없습니다.

· 돈을 달라는 내용증명(최고)을 보낸 뒤 6 개월 안에 지급명령 · 소송 ·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. 내용증명을 여러 번 보내도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(민법 제 174 조).